

#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

제정 2024. 3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(이하 “학부”라 한다)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학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**제3조(학부장)** ① 학부에 학부장 1명을 두며,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학부장은 학부의 행정을 통할하고, 학생 교육을 관장한다.

③ 학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학부장, 학생부학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부학부장)** ① 학부에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둔다.

② 부학부장은 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교수로 제청할 수 있다.

③ 교무부학부장은 교원 인사, 전공의 설치·운영, 입학·졸업·학적·교과과정·수업·학점 등 교무 및 학사에 관한 사항, 학술연구, 기자재 관리 및 기타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부장을 보조한다.

④ 학생부학부장은 학생의 보건, 후생, 상벌, 장학, 집회, 훈련, 병사, 학생활동 및 그 밖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, 대학 중·장기 발전계획 수립, 공간 조정 및 배정, 시설 기획, 발전기금 관리, 학부 홍보, 대외협력,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부장을 보조한다.

**제5조(전공주임)** ① 학부 내의 교과과정상 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전공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전공주임교수는 해당 전공 교과과정의 개발 및 운영, 학생 지도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학부장을 보조한다.

**제6조(행정지원부서)** 학부에는 행정실을 두며, 필요에 따라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교수회)** ① 학부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수회를 둔다.

②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8조(위원회)** ① 학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, 인사위원회, 학생 포상 및 징계위원회를 두며, 학부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 (2024. 3. 1.)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